





##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5~7일 사이 진단검사(8일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입국단계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8일 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즉각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입소비용 자부담)격리 조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귀하**

## 붙임2 : 격리면제 효력 불인정 사례 등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함
  - 10월 1일 발급, 10월 10일 입국 시 격리면제 효력 없음
- 격리면제서 및 활동계획서의 주요일정 등 변경이 있는 경우
  - \* 방문기업 또는 숙소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 일정변경 가능(관계부처 승인 필요)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발급 받아야 함(입국시 소지 필요)
  - 10월 1일 신청, 10월 2일 입국, 10월 3일 발급 시 격리면제 효력 없음
  - 반드시 입국심사(검역대 및 입국심사대)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격리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14일 격리하여야 함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즉시 격리면제 효력 없음
  - 자가진단앱 미설치 또는 능동감시 미이행, 진단검사 거부 등
  - 방역수칙 미준수 및 활동계획서 위반 또는 목적 외 활동
- 코로나19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시 효력 없음
  - 일반적 방역 수칙에 따라 격리 또는 병원으로 이동·치료
- 격리면제자 출국 사항 : 격리기간 도중 출국 원칙적 불가
  - 격리면제 기간이 10월 1일 ~ 10월 5일인 경우, 10월 6일 출국\*하지 않으면, 10월 6일~10월 15일(0시 또는 12시)까지 격리 후 출국 가능
  - \* 항공기 결항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다음날(10월 7일) 출국 가능
  - 격리면제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출국 가능
-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는 동일하여야 함. 단, 비자 발급에 시일 소요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계획서 상 단순한 일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은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검역법」, 「감염병관리법」, 「형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됨

※관련문서: 중수본-24871호(2020.9.23.), 중수본-25059호(2020.9.24.), 중수본-25916호(2020.10.5.)